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positor Protection of Variable Life Insurance

전 한 덕*
Jun, Han-Deok

목 차

- I. 서론
- II. 변액보험의 이해
- III.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
- IV. 결론

국문초록

변액보험은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특별계정에 산입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성과를 보험금에 반영시키고, 보험금액이 보험기간 중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방식의 보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액보험은 강한 투자성 및 이로 인한 원금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불완전 판매 소지가 매우 높은 상품으로 분류되고, 이는 소비자로서 하여금 변액보험 가입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 6월23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시행하면서 변액보험계약에서 최저보증보험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변액보험에 대하여도 최저보증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즉 새로운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가 큰 손실로 인한 파

논문접수일 : 2016. 06. 23.

심사완료일 : 2016. 07. 25.

게재확정일 : 2016. 07. 25.

* 법학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 KB생명보험 준법지원부

산 등으로 인하여 변액보험 최저보증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를 대신하여 최저보증보험금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설명 및 확인의무가 시행되면서 변액보험 가입자를 비롯한 모든 보험가입자가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 대상과 범위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 범위가 다소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 보험소비자 보호에 있어 다소 취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산출방법이 일반 보험계약과 동일한 것은 변액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것으로서 보험회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본 논문에서는 먼저 변액보험 및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새롭게 도입된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제도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변액보험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제도, 변액보험, 보험료, 최저보증보험금

1. 서론

2000년대 이후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변액보험이 출시되었다. 2001년 7월경 변액종신보험을 최초로 출시하면서 판매되기 시작한 변액보험은 그 후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보장을 해주는 형태로 출시되었고 꾸준히 성장하였다.

이러한 변액보험은 보험 가입기간이 장기라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완화하고,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장과 금융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의 확대라는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보험회사 및 각종 언론들이 변액보험의 장점만을 강조하여 보험소

비자들은 변액보험이 주식시장 등 경기의 변동이나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수익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나 불만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변액보험의 강한 투자성 및 이로 인한 원금 확보의 불확실성은 보험소비자의 변액보험 및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액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액보험 판매를 증진하고자 2015년 12월 22일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였고, 동 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¹⁾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액보험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의 주요 골자는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변액보험 최저보증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최저보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예금보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액보험 관련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²⁾ 이로 인하여 보험소비자가 예금자보호법 상 변액보험의 보장범위 및 내용 등에 있어 혼선을 일으켜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 소송 등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예금보험료 산출식이 일반 보험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불합리함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³⁾

예금자보호법 상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제도가 보험소비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충실하게 운영되고, 제도 운영상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

1) 예금보험공사 보도 참고자료, 머니투데이 1.26(화)자 “‘뜬구름만 잡은’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법’ 제하의 기사 관련”, 2016.1.27.

2)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는 예금자보호 대상을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법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증수수료' 또는 보험회사가 최저보증을 위해 적립한 '보증준비금'이 보호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다.

3) 조재린·이경아,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에 따른 고려사항”,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6.1.25., 8-10면.

보장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고, 보험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충실한 이행 및 변액보험 최저보증보험금의 특성을 고려한 예금보험료 산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변액보험의 개념과 도입 배경, 법적 성격, 변액보험의 보증유선 등 변액보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고,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상 변액보험 예금자보호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변액보험의 이해

1. 변액보험의 개념과 법적 성격

가. 변액보험의 개념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 : VLI)’이라 함은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특별계정에 산입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성과를 보험금(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에 반영시킴으로써, 보험금액이 보험기간 중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방식의 보험을 의미한다.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계약의 기본보험금과 투자실적에 따라 증감하는 변동보험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당해 연도의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보험료)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⁵⁾으로 나누어 주식 등에 투자하여 얻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이 변동하게 된다.⁶⁾ 따라서

4)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5)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이라 함은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 손익을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6-21조 제1호).

특별계정에서 기존 정액형 보험상품 예정이율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차액만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생기면 보험금이 줄어들어 보험계약자 등이 의외의 손실을 입을 수 있게 된다.⁷⁾ 이와 같이 변액보험은 보장성에 투자성을 더하여 일반적인 보험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⁸⁾

이에 반하여 정액보험은 계약체결시에 계산된 책임준비금이 변동되는 일이 없고, 보험가입금액도 변동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액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위험이 거의 없다.⁹⁾ 그러나 노후생활보장기능을 하는 종신·양로보험과 같은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rapid inflation) 등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금부의 실질가치가 감소되는 문제가 생긴다. 정액보험의 이러한 실질가치 하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변액보험이다. 또한 변액보험은 주로 고금리나 주식 시장의 호황 지속으로 인하여 기존의 경직된 이율(고정이율, 공시이율 등)만으로는 보험금부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타 금융권의 경쟁상품 수익률과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생명보험자금의 외부 유출방지를 위한 측면에서 운용되고 있다.¹⁰⁾

나. 법적 성격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생명보험상품이다. 이와 같이 변액보험은 특별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6) 최병규, “자본시장법이 보험업에 미칠 영향(변액보험 정보공개문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6, 444면.

7) 맹수석, “변액보험제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9권, 보험연구원, 2003, 9., 6면; 최수영, “변액보험의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11, 10면; 김대연, “변액보험(부당권유로 인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9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420면; 김선정, “변액보험계약체결시 부당설명한 보험자의 법적책임(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13권 제1호, 보험개발연구원, 2002, 3, 21면.

8) 김은경, “변액보험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의 의미 - 대법원 2013.6.13. 선고 2010더34159 판결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30권 제4호, 2014. 2., 270면.

9) 맹수석, 상계논문, 7면.

10) 맹수석, 상계논문, 7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고,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만기 시 연금이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보험상품으로 볼 수도 있는 등 2가지 성격을 혼합되어 있다.¹¹⁾ 이하에서는 변액보험의 성격을 금융상품으로 보는 금융상품설과 보험상품으로 보는 생명보험상품설의 주요 내용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금융상품설은 변액보험은 최저보증이 담보된 사망보험금이나 연금보험금 등을 제외한 펀드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변액보험에 대한 규제는 보험업법 등 보험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타 금융상품 간에 공정한 경쟁과 거래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 금융투자 관련 법규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¹²⁾

반면에 생명보험상품설은 변액보험은 일반 정액보험과 달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변동되게 한 이유는 생명보험의 보장적 성격을 보완하고자 함이고, 투자적인 성격은 이에 부수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변액보험은 투자성 금융상품이 아니고 종래의 정액보험이 일부 변형된 형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등 보험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¹³⁾

생각건대 변액보험은 일반 정액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줄이고, 보험금에 대한 실질가치 보장과 보험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는 점, 변액보험이 최저 사망보험금보증이나 최적연금적립금보증 등 여러 보증옵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변액보험이 일반 정액보험과 같이 보장적 기능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의 견지에서 볼 때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업법이나 동 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등 여러 보험 관

11) 김선정, “변액보험과 계약자 보호”, 「상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7, 221-224면 ; 최수령, 전제논문, 13면.

12) 김선정, 상계논문, 211-212면 ; 옥무석, “변액보험의 법률관계”, 「생협」 134호, 생명보험협회, 1990, 8면.

13) 김대연, 전제논문, 431면.

런 법령에서는 이러한 변액보험이 생명보험상품이라는 성격을 반영하여 변액보험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¹⁴⁾

2. 변액보험의 기원

변액보험은 1956년 네덜란드의 발더유(De Waerdye)라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의 변액보험인 프랙션(Fraction) 보험을 판매한 이래 1957년 영국¹⁵⁾, 1967년 프랑스·캐나다, 1970년 독일, 1976년 미국¹⁶⁾ 및 1986년 일본¹⁷⁾에서 판매를 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관리체제 이후 금리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소비자의 고금리수요충족과 함께, 급속한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헷지수단의 일환으로 도입이 검토되었고,¹⁸⁾ 2001년 4월 27일 보험업감독규정에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후 2001년 7월부터 변액종신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10월부터 변액연금보험을, 2003년 7월부터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판매하였다.¹⁹⁾

-
- 14)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동법 제95조의4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동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의2(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동 규정 제4-34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동 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에서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 15) 1957년, 영국의 런던&맨체스터 회사는 변액연금보험을, 런던&에딘버그 회사는 변액양로보험을 각각 개발·판매하였는데, 영국의 변액보험은 일반적으로 “유닛링크드(Unit Linked)보험”이라고 한다. 이는 생명보험과 투자신탁(Unit Trust)가 결합한 상품으로 양로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변액보험의 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이나 외부에 위탁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 등에 편입된다(김광수, “변액보험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4, 15면).
- 16) 미국에서 변액연금은 1976년에 에퀴터블(Equitable)사에 의해 도입·판매되었다. 미국에서 변액보험의 도입이 늦어진 것은 변액보험을 일종의 증권으로 등록하고, 보험설계사들이 판매를 위해 증권취급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가 요구되었고, 보험설계사 스스로도 증권거래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장동한,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도입에 관하여”, 『계간금융동향 : 분석과 전망』 제5권 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1996, 7면).
- 17) 생명보험협회, 「변액보험의 이해와 판매」, 2012, 131면.
- 18) 맹수석, 상계논문, 7면.
- 19) 생명보험협회, 앞의 책, 141, 153, 161, 168면.

3. 변액보험의 종류

변액보험은 보장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변액종신보험(Variable Whole Life Insurance ; VWL), 변액연금보험(Variable Annuity ; VA), 변액유니버설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 ; VU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변액보험 상품별 특징 및 보장구조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가. 변액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은 2001년 7월경에 시판된 상품으로, 투자수익률에 관계없이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보장 내용으로 한다.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는 된다.²⁰⁾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CI(Critical Illness) 급부를 포함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변액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중 기본보험금이 최저보증 되며, 변동보험금은 매월 계약 해당일마다 일시납보험료 추가증액방법에 의해 재계산되어 1개월간 확정 적용된다. 변액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²¹⁾

나.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2002년 9월경에 시판된 상품으로, 연금개시 전에는 투자실적에 따라 적립액(연금재원)이 변동되며, 연금개시 후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보장 내용으로 한다. 즉 변액연금보험은 연금보험에 변액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입된 실적배당형 연금상품을 의미한다.²²⁾ 이러한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을 2

20) 김지환, “변액보험의 운용과 법적 문제점”, 「상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2004, 305면.

21) 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가 설정한 여러 개의 펀드(채권형, 혼합형 등)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펀드를 직접 선택하고, 보험기간 중 수시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2) 김지환, 상계논문, 306면.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연금지급개시 전인 제1보험기간에는 변액종신이나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유사하게 보장하고, 연금개시 후인 제2보험기간에는 종신연금을 지급한다.²³⁾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제1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기납입보험료를 최저사망보증보험금으로 보장해 주고, 연금개시 전에 투자실적이 악화되어도 제2보험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는 기납입보험료를 최저연금적립보험금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변액연금에는 이러한 최저보증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금손실의 위험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²⁴⁾

다. 변액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은 2003년 7월경에 시판되었고, 보장과 저축 기능을 겸한 생사혼합형보험으로 여기에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추가보험료 납입 등의 유니버설 기능이 추가된 상품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최저보증하는 기본보험금과 사망시점까지 적립된 계약자적립금으로 구성된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특별계정으로 조성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는 점, 펀드의 운용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도 최저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운용의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펀드변경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는 변액종신보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²⁵⁾ 그러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수시로 해지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고,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등은 변액종신보험과 차이가 있다.²⁶⁾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은 2004년 7월경 시판된 상품으로 변액종신보험에 유니버설기능이 추가되었다.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23) 최수령, 전계논문, 21면.

24) 생명보험협회, 앞의 책, 161면.

25) 심규현, “변액보험의 소비자보호 :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2014.8., 29면.

26) 생명보험협회, 앞의 책, 167-170면.

동안에는 기본보험금이 보증된다는 특징이 있다.

4. 변액보험의 보증옵션

변액보험은 보험고유의 기능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성과와 관계없이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나 연금개시 시에 지급되는 연금액 등이 최저보증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기능을 위하여 보증비용(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등)이 부과되는데,²⁷⁾ 이는 납입보험료에 포함되며, 회사는 이 보증비용을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일반계정의 최저사망보증준비금으로 전액 적립된다. 만약 사망시점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부족분으로 사용된다. 이하에서는 변액보험의 주요 보증옵션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가.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옵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 GMDB)’이란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또는 변액연금보험에서 최저사망보험금보증으로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기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옵션이다.²⁸⁾

변액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투자실적이 부진할 경우 변동보험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의 합산 금액)이 기본보험금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옵션에 따라 기본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27) GMDB의 보증비용은 일반적으로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3% 수준을 부과하고 있고, GMAB의 보증비용은 일반적으로 펀드의 자산구성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으며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5%~0.7% 수준을 부과하고 있고, GMWB 및 GLWB의 보증비용은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7% 수준을 부과하고 있다.

28) 보험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징수한다.

보험회사들은 최저사망보험금보증 방법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증하는 형태(ROP), Step-up, Roll-up 등의 옵션을 적용하고 있다. Step-up (Ratchet)은 2007년 일부 외국사에 의하여 국내에 도입된 옵션으로 3년 또는 5년 단위(계약해당일)로 계약자적립금과 최저보증적립금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새로운 최저보증적립금으로 결정하는 형태이며, Roll-up은 2008년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형태이다.²⁹⁾

나.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옵션

변액연금보험은 제1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기납입보험료를 최저사망보증보험금으로 보장해 주고, 연금개시 전에 투자실적이 악화되어도 제2보험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는 기납입보험료를 최저연금적립보험금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최저연금적립금보증(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 GMAB)’이란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안정적인 연금액 지급을 위하여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연금개시시점 즉 제1보험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연금재원이나 일시금의 수령을 최저연금적립보험금인 기납입보험료 수준까지 보증하기 위한 옵션이다.³⁰⁾ 그러나 연금개시시점 전에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를 최저사망보증보험금으로 보장해 주고,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매일 적립된 적립금이 지급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의 방법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증하는 형태(ROP), 일정기간 경과 후 최저보증액 수준이 변경되는 Ratchet(또는 Step-up),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율 수준을 보증하는 Roll-up 형태가 있다.³¹⁾

2016년 4월 1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시행되면서 변액연금 중에

29) 오창수·김혜경,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에 관한 연구”, 「계리학연구」 제5권 제2호 제9집, 한국계리학회, 2013.12., 56면.

30) 보험회사는 최저연금적립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을 징수한다.

31) 오창수·김혜경, 상계논문, 56면.

서 GMAB 미보증형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GMAB 미보증형상품은 투자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연금개시 시점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연금 재원이 더 적을 수도 있어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다. 최저중도인출금보증(GMWB), 최저중신중도인출금보증GLWB) 옵션

‘최저중도인출금보증옵션’은 적립금이 일정수준에 누적될 때까지 인출을 제한하고, 보증기간 동안 인출이 가능하도록 보험사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금개시시점에서 기납입보험료 100% 이상을 보증하되 연금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확정연금으로 지급한다.³²⁾

‘최저중신중도인출금보증’은 변액연금보험에서 제2보험기간에도 특별계정에 서 변액상품을 운영하면서 연금연액(인출액)을 중신토록 최저보증 하는 형태이며, 연금연액은 연금개시나이에 따른 지급률을 차등화한 금액을 중신토록 지급한다.³³⁾ 연금연액은 연금지급시의 적립액과 최저보증급부 중 큰 금액에 연령에 따라 차등화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³⁴⁾

Ⅲ.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

1. 예금자보호제도 개관

가. 예금자보호제도의 개념과 기능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의 구체

32) 오창수·김혜경, 상계논문, 56-57면.

33) 오창수·김혜경, 상계논문, 57면.

34) 오창수·김혜경, 상계논문, 57면.

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예금자보호법 제1조).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위기나 금융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객들의 집단적인 예금인출을 억제함으로써 금융시스템과 부보 금융기관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예금자나 채권자들의 경우 금융기관의 위험이 증가할수록 높은 이자를 요구함으로써 시장규율이 작동하게 하며, 금융위기시 예금보험제도가 전액보장제도로 전환되어 예금자들의 '우량금융기관 쏠림현상(flight to quality)'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³⁵⁾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전액보장은 시장규율 약화, 금융시스템 장기적 불안정, 고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나. 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³⁶⁾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보험회사의 경우 재보험³⁷⁾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대상 금융회사이나,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35) 이순재,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보험부문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05.1., 8-9면.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의미한다.

37) 재보험이란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다시 넘기는 것을 말한다. 특정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1차 계약을 원보험이라 하는데, 재보험은 통상 원보험계약의 가입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정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울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보험회사가 부보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복 보호를 피하기 위해 재보험회사는 부보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법제처, 「예금자보호법 해설」, 2011.9., 17면)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다.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등'을 의미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각 주요 업종별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 금융투자상품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 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상품 -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주식워런트증권 등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보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변액보험 최저보증보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최저보증보험금은 제외)

*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라. 보험사고에 따른 예금보험금의 지급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다.³⁸⁾

‘보험사고’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에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로서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를 의미하는 1종 보험사고 또는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또는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의미하는 2종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1종 보험사고는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조사하며, 그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 등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등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절차 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않는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5항).

예금자보호법 제31조에서는 부보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에 예금자등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38)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19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한 적도 있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영업 정지, 인가 취소 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보호하고 있다. 예금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총생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비해 너무 낮게 보장하고 있어 예금자보호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박사현,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제17권 제2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12., 211면),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있다.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 또는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제2종 보험사고)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가지급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장기간 예금지급이 정지되어 예금자들이 동요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지급결정이 난 후에 지급시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예금자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지급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³⁹⁾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6항에서는 보험금 지급시 분쟁가능성이 있는 예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예금자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는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 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예금자란 예금자등이 부실관련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마. 보험료율 체계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보험료 산정산식을 규정하고

39) 법제처, 앞의 자료, 114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부보금융기관	보험료 산정산식
은행	분기별 보험료 = 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 8/1만 × 1/4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연간 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15/1만
보험회사	연간 보험료 = (책임준비금+수입보험료)/2 × 15/1만
종합금융회사	연간 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15/1만
상호저축은행	연간 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40/1만

한편 위와 같이 각 업권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산정방식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개별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인을 제공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개별 부보금융회사별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⁴⁰⁾ 그 외에도 예금보험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에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목표기금제도⁴¹⁾를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40)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는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제16조의5제1항의 경우에는 그 감액된 보험료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기관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4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5(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공사는 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보금융기관에게 환급하거나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만원의 연간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바.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 등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부보금융회사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보호여부 등 예금보험관계의 성립여부를 표시함으로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표시제도와 관련된 주요 업무로는 첫째 부보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거래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통장 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하고, 둘째 부보금융기관은 당해 부보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호금융상품에 관하여 보호상품등록부를 작성, 제출 및 비치해야 한다. 셋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안내책자 및 팸플릿 등을 제작하여 부보금융기관에 교부할 수 있으며, 부보금융기관은 동 자료를 영업점에서 고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넷째 부보금융기관은 직접 개발하여 판매하는 모든 신상품의 보호여부에 대하여 공사에 사전 또는 사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 밖에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에 더하여 2015년 12월 22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제도가 의무화되었다.⁴²⁾ 예금보험공사에서 마련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의 확인 표준문안은 아래 표와 같다.

42) 예금자보호법 제29조 ④ 부보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방식	설명의 확인 표준문안				
서면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고객명 : 서명 또는 (인) </div>				
녹취	고객님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음성녹음으로 확인합니다.				
전자 금융거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70%;">본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확인]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전자서명</td> </tr> </table>	본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input type="checkbox"/>	전자서명	
본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input type="checkbox"/>				
전자서명					

한편 예금보험관계 설명, 확인제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융정보취약계층(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을 다른 설명사항에 비해 우선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마련한 금융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설명의 확인 표준문안은 아래 표와 같다.

<p>■ 금융정보취약계층(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하시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신 고객께서는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①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십니까?(√체크) <input type="checkbox"/>만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은퇴자 <input type="checkbox"/>주부 <input type="checkbox"/>불이익사항 우선 설명 요청 고객</p> <p>②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 들으셨습니까? [우선적으로 설명 들었음(자필기재)]</p> <p style="text-align: right;">고객명 : 서명 또는 (인)</p>
--

2. 예금자보호법 상 변액보험에 대한 예금자보호의 주요 내용

가. 의의

2015년 12월 22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6월 23일부터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가 개시되었다. 사실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변액보험계약 중에서 원본이 보전되는 범위(예를 들어 변액보험 계약의 특약의 경우) 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왔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다목). 그러나 변액보험은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특별계정에 산입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성과를 보험금(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에 반영시킴으로써, 보험금액이 보험기간 중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투자성이 강한 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계약에 있어서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이번에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 변액보험의 보호 범위는 최저보증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등)으로 이는 은행의 예금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⁴³⁾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즉 변액보험에서 최저보장을 하는 보험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정액보험과 동일하게 정해진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보험계약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편입된 것이다.

나. 법적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43)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머니투데이 7.31(금)자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법 허점 투성이 계약자·보험사 누구도 혜택 못받아“ 제하의 기사 관련”, 2015.7.31.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⁴⁴⁾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채권은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의미한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 보험회사에 있어 ‘예금등’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을 의미한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다목).

예금자보호법에 의할 때 변액보험계약에 있어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즉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예를 들어 약관대출금)를 공제한 금액 중에서 5천만원 한도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①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 ②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및 ③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다. 주요 내용

1) 최저보증보험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4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2016년 6월 23일부터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액보험에 대하여도 최저보증보험금⁴⁵⁾의 범위 내에서 예금자보호가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큰 손실로 인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변액보험 최저보증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를 대신하여 최저보증보험금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최저보증보험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약관에 미리 정해 놓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편입된 것인데, 보험의 원리, 예금자보호법의 취지 및 보험계약자의 실질적 보호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최저보증보험금을 정해 놓은 취지 자체는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예금보험료 수취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보험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저보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수취한다.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수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다른 일반보험계약에 대한 예금보험료와 유사하게 계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보고 있는데(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예금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연간 예금보험료} = (\text{책임준비금} + \text{수입보험료}) / 2 \times 15 / 1\text{만}$$

45) 변액보험은 보험고유의 기능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성과와 관계없이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나 연금개시 시에 지급되는 연금액 등이 최저보증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최저중도인출금보증(GMWB), 최저중신증도인출금보증(GLWB) 등이 있다.

다만 차등보험료율제⁴⁶⁾, 목표기금제⁴⁷⁾ 등에 따라 각 보험회사 별로 예금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3) 예금자보호 표시 및 설명·확인 의무

가) 주요 내용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2항). 이러한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보호여부 등 예금보험관계의 성립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예금자보호 여부 및 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금융상품을 가입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부보금융기관은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보호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부보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 방법으로 부보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거래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과 통장 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을 공시하여야 한다(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변액보험의 최저보증보험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신규 편입되면서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하여 표시할 의무가 발생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작성한 변액보험의 표준 예금자보호 안내문은 아래 표와 같다.

변액보험 예금자보호안내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상품별 용어 ^{주1)})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

46) '차등보험료율제'란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 부보금융회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예금자보호법 제30조 단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47) '목표기금제'란 예금보험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 규모를 설정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4),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 변액보험 상품 종류에 따라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 최저중신중도인출금 등 기존 약관 및 운용설명서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준용하되, 상품설명서나 약관 등에서 동 용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함

한편 2015년 12월 22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부보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여부, 보험금의 한도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3항), 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4항).

따라서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관계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을 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 등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설명 의무와 관련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1항과 제2항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95조의2에서도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액보험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는 상법 및 보험업법 상에 규정된 설명의무를 예금자보호에 한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있어 예금보험관계에 관한 사항도 상법 및 보험업법에서 말하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⁸⁾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객관적으로 볼 때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알았더라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으로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금,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자의 책임범위와 책임개시시기, 해지환급금, 고지의무 및 각종 통지의무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⁴⁹⁾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원본 손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본 손실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대비되는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저보증보험금에 관한 예금자보호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잘 못 설명하였을 경우에는 설명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⁵⁰⁾⁵¹⁾ 또한 보험계약자는 상법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⁵²⁾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48)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약관의 어떤 사실에 대한 보험계약자 측의 知·不知가 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박세민,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15, 151면).

49) 대판 2015.11.17, 2014다81542 판결 ; 대판 2000.5.30, 99다66236 판결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1판, 박영사, 2009, 504면 ; 서헌제, 「상법강의(하)」, 법문사, 2002, 61면, 임용수, 「보험법」, 법률정보센타, 2006, 82-83면, 박세민, 앞의 책, 151면.

50) 만일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보험자와 사이에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51) 대판 2015.11.17, 2014다81542 판결 ; 대판 2014.10.27, 2012다22242 판결 ; 대판 2005.10.28, 2005다38713 판결 등.

52) 계약자 취소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1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약관의 구속력(약관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수설인 상법적용설(1개월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되며 보험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러한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⁵³⁾ 실무상으로는 설명의무 입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

3. 문제점 및 개선의견

가. 예금자보호 대상 및 범위의 불명확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변액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즉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예를 들어 약관대출금)를 공제한 금액 중에서 5천만원 한도 범위 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 파산시 보험계약자는 최저보증수수료 또는 보험회사가 최저보증을 위해 적립한 보증준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최저보증준비금의 소유권이 계약자가 아닌 보험회사에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 혜택은 계약자가 아닌 보험회사에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된다.⁵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험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변액보험의 최저보증보험금(최저보증준비금+최저보증수수료)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고,⁵⁵⁾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보험계약자는 본인의 최저보증준비금 및 최저보증

붙), 판례의 입장인 중첩적용설(취소권의 행사 없이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다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조항의 효력을 다룰 수 있다고 봄)이 있다.

53)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대판, 2001.7.27, 99다55533 판결 ; 대판, 2003.8.22, 2003다27054 판결 등).

54) 머니투데이, “예금자보호 안되는 변액보험 예금지보호법 ‘허점 투성이’”, 2015.7.31.자 기사.

55)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머니투데이 7.31(금)자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법 허점 투성이 계약자·보험사 누구도 혜택 못받아“ 제하의 기사 관련”, 2015.7.31.

수수료의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저보증준비금이 보험회사가 소유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파산한 후에는 해당 가액의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공사는 각 개별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예금자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수급권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즉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그 동안의 투자성과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옮겨지는데, 이 경우 더 이상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다.⁵⁶⁾ 이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는 연금이 개시돼 일반적으로 넘어간 계약이라도,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 보험계약은 보험사 파산시 마이너스 난 부분만큼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입장이다.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보험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회사 평판도가 하락 및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금자보호법 조항과 실제 실무상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자보호 대상을 '최저보증보험금'으로 명확하게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⁵⁷⁾ 또한 예금자보호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향후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하고,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도 혼선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예금자보호의 소급적용 문제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제도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6년 6월 23일 이후에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6월 23일 이전에 변액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 대해서까지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즉

56) 머니투데이, 앞의 기사.

57) 조재린·이경아, 앞의 자료, 9면.

예금자보호법에 소급적용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전 가입자는 예금자 보호가 불가하다는 입장과 2016년 6월 23일 이후부터 기존 계약자가 가입한 변액보험에 대한 예금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된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후자의 입장에 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에 명시적인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만약 예금보험공사의 입장과 같이 소급적용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막대한 추가보험료 부담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이전 계약자에 대하여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 의무의 이행이나 설명확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2016년 6월 23일 이전에 가입한 변액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명확한 경과규정을 만들고, 예금보험관계의 표시·설명 의무의 이행이나 설명확인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 합리적 예금보험료 산정 필요

보험회사의 일반 정액보험의 예금보험료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즉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구체적인 연간 예금보험료는 “(책임준비금+수입보험료)/2 × 15/1만”의 산식으로 산출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예금보험료는 변액보험계약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인 보증준비금과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특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전인 최저보증비용의 합산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⁵⁸⁾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연간 예금자보험료를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다.

58)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2호.

$$\text{연간 예금보험료} = (\text{FY16보증준비금} + \text{FY16최저보증비용})/2 \times \text{차등보험료율} \\ \times 192/366^*$$

* 예금자 보호시점인 2016년 6월 23일부터 일할계산

일반 정액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산출식을 적용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경우 최저보증보험금에 대해서만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파산된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타 보험회사에 계약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계약자가 예금자보호 혜택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점, 일반보험계약은 해지할 경우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반환하는 반면에 변액보험 해지시에 보험회사는 최저보증수수료 및 보증준비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⁵⁹⁾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변액보험계약의 예금자보험료를 단순히 보증준비금과 최저보증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최저보증보험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금보험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⁶⁰⁾ 예를 들어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변액보험 해지시에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변액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수수료 및 보증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보험계약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액보험에서 예금보험료 산출시 보험회사가 공제하는 최저보증수수료나 보증준비금의 액수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의 파산 발생 리스크 등을 고려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9) 변액보험의 최저보장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최소보험금 보장을 위해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전으로 보험회사 소유로 볼 수 있다.

60) 조재린·이경아, 앞의 자료, 10면.

IV. 결론

그 동안 변액보험은 향후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여 판매해 왔고, 보험소비자들은 변액보험이 주식시장 등 경기의 변동이나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수익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보험설계사 또한 변액보험의 복잡한 상품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변액보험의 강한 투자성 및 이로 인한 원금 확보의 불확실성은 보험소비자의 변액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액보험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고, 보험계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2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변액보험계약의 최저보증보험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은행의 예금과 동일하게 보호가 필요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보험금을 보호 대상에 편입함으로써 계약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안전하게 유지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설명 및 확인의무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한층 더 고객 보호에 있어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액보험 관련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 이전 변액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별도의 근거 조항이 없이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추가예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설명의무 이행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점, 그리고 예금보험료 산출이 단순하게 보증준비금과 최저보증비용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은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기존 변액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

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보험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보험계약과 차별화된 보험료 산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서적]

- 박세민,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15.
법제처, 「예금자보호법 해설」, 2011.9.
서헌제, 「상법강의(하)」, 법문사, 2002.
생명보험협회, 「변액보험의 이해와 판매」, 2012.
임용수, 「보험법」, 법률정보센터, 2006.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1판, 박영사, 2009.

[논문]

- 김광수, “변액보험에 관한 법적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4.
김대연, “변액보험(부당권유로 인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9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김선정, “변액보험계약체결시 부당설명한 보험자의 법적책임(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제13권 제1호, 보험개발연구원, 2002.
김선정, “변액보험과 계약자 보호”, 「상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7.
김은경, “변액보험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의 의미 - 대법원 2013.6.13. 선고 2010더34159 판결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30권 제4호, 2014.2.
김지환, “변액보험의 운용과 법적 문제점”, 「상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2004.
맹수석, “변액보험제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9권, 보험연구원, 2003.9.

- 박사현,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제17권 제2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12.
- 심규현, “변액보험의 소비자보호 :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2014.8.
- 옥무석, “변액보험의 법률관계”, 「생협」 134호, 생명보험협회, 1990.
- 오창수·김혜경,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에 관한 연구”, 「계리학연구」 제5권 제2호 제9집, 한국계리학회, 2013.12.
- 이순재,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보험부문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05.1.
- 장동한,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도입에 관하여”, 「계간금융동향 : 분석과 전망」 제5권 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1996.
- 조재린·이경아,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에 따른 고려사항”,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6.1.25.
- 최병규, “자본시장법이 보험업에 미칠 영향(변액보험 정보공개문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6.
- 최수령, “변액보험의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11.

[Abstract]

A study on Depositor Protection of Variable Life Insurance

Jun, Han-Deok

KB Life Insurance Company, Compliance Dept.

Variable Life Insurance means insurance product which all or part of paid insurance premium is added to the separate account and it's management performance is reflected in the insurance benefit and the benefit is connected

with asset management performance. Variable Life Insurance is classed as a product of high possibility of an incomplete sale, and sometimes this is the reason the consumers turn away from the insurance. To improve the these problems Depositor Protection Act was revised and entered into force on June 23, 2016, guaranteed minimum benefit option of Variable Life Insurance was newly qualified for protection under the Act. Accordingly from now on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will be applied to Variable Life Insurance within a range of the guaranteed minimum benefit. In other words as a new Depositor Protection Act if the insurance company could not pay the guaranteed minimum benefit to the Variable Life Insurance customer on account of bankruptcy and so on,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would pay with in a range of fifty million won of guaranteed minimum benefit on behalf of insurance company. And duties of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on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was newly introduced by the Act, every policyholder including Variable Life Insurance one is able to buy insurance policy after hearing sufficiently about the program.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with the revised Depositor Protection Act as following. First, target and range for depositor protection of Variable Life Insurance regulated on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e ambiguous, and it can create confusion to the customer. Second, the scope of depositor protection is rather narrowly specified and it will not be enough for customer protection Third, calculation for insurance premium of Variable Life Insurance is the same with the general insurance. And this is unreasonable because when calculating the premium, distinctiveness of Variable Life Insuran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is dissertation I would like to review Variable Life Insurance and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and main issues on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of Variable Life Insurance. And finally I will point out several problems in the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of Variable Life Insurance and present reasonable improvement proposal.

Key words : Depositor Protection Act, Depositor protection program, Variable Life Insurance, Insurance premium, Guaranteed minimum benefit